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(박성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469

발의연월일: 2024. 8. 30.

발 의 자: 박성민·강선영·김석기

김정재 · 김기현 · 서범수

김상욱 • 박덕흠 • 이상휘

구자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중앙정부가 지방자치분권·지역균형발전을 역점 추진하고 있음에도 수도권 일극체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바, 지역소멸을 막고 균형있 는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여건에 맞는 특성화 전략과 이를 위한 맞춤형 특례의 제도화가 필요한 실정임.

석유·가스·원자력 등 에너지산업과 함께 자동차·조선 등 국가기 간산업을 선도했던 울산·포항·경주권의 해오름산업벨트는 지역소멸 과 산업구조 전환기에 직면하여 그 생존의 기로에 서있는 가운데, 지 방균형발전 시대에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목표로 이차전지 등 국가 미래첨단전략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는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 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해소 및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.

이에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, 합리적 규제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해오름산업벨트 관할 광역지방자

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, 합리적 규제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해오름산업벨트는 울산광역시, 경상북도 포항시 및 경주시 관할구역으로 함(안 제2조).
- 다. 행정안전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해오름산업벨트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고,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지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5년 마다 해오름산업벨트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(안 제5조).
- 라.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하며,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해오름산업벨트추진기획단을 구성함(안 제7조 및 제 8조).
- 마. 해오름산업벨트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각종 특례를 둠 (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).
- 바.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으로 하여 금 의료 및 교육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9조)

사.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환경·산업 분야에 대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, 예산, 장비 및 인력을 이관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0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성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47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해오름산업벨트의 조성 및 전략적 육성, 합리적 규제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해오름산업벨트"란 전기·가스·석유·원자력 등과 관련된 에너지산업과 자동차·조선 등을 포함한 국가기간산업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발전시기키 위하여 울산광역시, 경상북도 포항시 및 경주시(이하 "관할 지방자치단체"라 한다)의 관할구역을 연계한 지역을 말한다.
- 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이 법 중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한 제5장(제12조부터 20조까지)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② 제5조에 따른 해오름산업벨트 발전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. 다만, 「국토기본법」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 종합계획 및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16조에 따른 보호

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는 해오름산업벨트의 이용·개발 및 보 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추진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해오름산업벨 트의 이용·개발 및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과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제2장 해오름산업벨트 발전계획의 수립 등

제5조(발전계획 수립과 확정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가 해오름산업벨트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고, 협력을 통한 지역균형발 전의 거점지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5년마다 해오름산업벨트 발전계획(이하"발전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발전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- 2. 국가기간산업 고도화 및 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
- 3. 에너지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
- 4.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
- 5. 비행안전구역 및 장애물제한표면 개발에 관한 사항
- 6. 산업단지 지정·개발에 관한 사항

- 7. 산업 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
- 8. 물관리 및 하천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
- 9.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·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10. 광역교통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
- 11. 첨단이차전지 · 워전 기업의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
- 12.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
- 13.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에 관한 사항
- 14. 해오름산업벨트의 조성·발전 사업비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
- 15. 해오름산업벨트의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
- 16. 그 밖에 해오름산업벨트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역균형발전 거 적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울산광역시장 및 경상북도지사(이하 "관할 시·도지사"라 한다)와 협의를 거쳐 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, 관할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관할 시·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해오름 산업벨트에 대한 발전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.
- ⑤ 관할 시·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해오름산업벨트에 대한 발전계 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

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-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발전계획안을 수립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제7조에 따른 해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 정한다.
-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⑧ 발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.
- 제6조(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확정) ① 관할 시·도지사는 제5조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발전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관할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 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제7조에 따른 해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 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연도별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⑤ 연도별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
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장 해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 등의 설치

- 제7조(해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) ① 해오름산업벨트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 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1. 제5조에 따른 발전계획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- 2.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- 3.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
 - 4. 그 밖에 해오름산업벨트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한다.
 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
 - 2. 울산광역시장·경상북도지사
 - 3. 문화·산업·경제·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
 -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

및 관할 시·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따라야 한다.

- ⑤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해오름산업벨트추진기획단) ①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소속으로 해오름산업벨트추진기획단을 둔다.
 - ② 해오름산업벨트추진기획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 · 기획
 - 2.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관 간 협조
 - 3. 위원회 의안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 지원
 - 4. 그 밖에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에 필요한 사항
 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해오름산업벨트추진기획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에너지산업 관련 연구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④ 해오름산업벨트추진기획단의 구성·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장 해오름산업벨트발전사업의 시행 등

- 제9조(사업시행자) 해오름산업벨트에 관한 발전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(이하 "해오름산업벨트발전사업"이라 한다)의 시행자(이하 "사업시행자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로 한다.
 - 1. 국가
 - 2. 지방자치단체
 - 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 - 4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
 - 5.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
 - 6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
- 제10조(해오름산업벨트발전사업의 시행 승인) ① 사업시행자(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)는 해오름산업벨트발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(이하 "사업승인권자"라 한다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- 1. 해당 사업이 울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경우: 울산광역시장
 - 2. 해당 사업이 경상북도 포항시 또는 경주시에서 시행되는 경우:

포항시장 또는 경주시장

- 3. 해당 사업이 경상북도 포항시와 경주시 모두에서 시행되는 경우: 포항시장 및 경주시장
- 4. 해당 사업이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시행되는 경우: 울산광역시장 및 포항시장
- 5. 해당 사업이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시행되는 경우: 울산광역시장 및 경주시장
- 6. 해당 사업이 울산광역시, 경상북도 포항시 및 경주시에서 시행되는 경우: 울산광역시장, 포항시장 및 경주시장
-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.
- ③ 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
- 2.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공 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.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
- 제11조(인ㆍ허가등의 의제) ① 사업시행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

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·인가·지정·승인·협의·신고·결정 등(이하"인·허가등"이라 한다)을 받은 것으로보며,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·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본다.

- 1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의 점용·사용허가,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·사용 실시계획의 승인,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,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
-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·군관 리계획의 결정(같은 법 제2조제4호 다목 및 마목의 계획으로 한정 한다),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및 형질 변경의 허가,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
- 3. 「농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·협의,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·협의
- 4. 「산림보호법」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

- 5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7조, 제17조의2, 제18조,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·변경 승인
- 6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 및 제 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
- 7. 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,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·신고
- 8. 「하천법」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,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,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
-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·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「행정기본법」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.

제5장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을 위한 지원 및 특례

제12조(에너지산업 지원 등에 관한 특례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오름산업벨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「분산에너지 활성화특별법」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할 수있다.

-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「전기사업법」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해오름산업벨트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대하여는 송배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다른 지역과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- 제13조(개발제한구역해제에 관한 특례) ① 관할 시·도지사는 「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할 시·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총 면적은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, 자연환경 등을 고려하여 100만 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3조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때에는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당해 관할 시·도지사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
 - ④ 관할 시·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전략환경영향 평가서의 내용을 검토할 때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(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도지 사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·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)

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- ⑤ 제3항에 따라 관할 시·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사항에 관한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관할 시·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.
- 제14조(비행안전구역·장애물제한표면 및 하천 복개에 관한 특례) 국가는 해오름산업벨트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비행과 국가 수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6조 및 제10조, 「공항시설법」 제34조 및 「하천법」 제46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.
- 제15조(국가산업단지 지정요청·개발에 관한 특례) ①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·도지사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대상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 관은 요청받은 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.
 - ③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오름산업벨트 내의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④ 관할 시·도지사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3 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 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- 제16조(산업 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에 관한 특례) ① 교육부장관은 해오름산업벨트의 인력양성과 교육지원을 위하여 국립대학교 및 국립대학교 공동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다.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 해오름산업벨트로 이전·설치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7조(광역교통망 구축 등에 관한 특례) ① 울산광역시, 경상북도 포항시 및 경주시는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의 대도시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.
 -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해오름산업벨트 광역교통망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오름산업벨트발전사업에 대하여 「국가재정법」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.
- 제18조(첨단이차전지·원전 기업의 상생협력 촉진) 국가 및 관할 시·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오름산업벨트 내 첨단 이차전지 및 원전 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· 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제19조(의료・교육시설 설치 지원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「의료법」

-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설립 등 해오름산업벨트의 의료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교육부장관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및 「영재교육 진흥법」 제6조에 따른 영재학교 등 해오름산업벨트 의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.
- 제20조(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「정부조직법」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.
 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우선적으로 이관하여야 한다.
 - 1. 생태환경보전, 하천시설 유지보수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
 - 2. 중소기업, 창업·취업 지원 등 지방정부와 유사·중복성이 크고,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현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
 - ③ 사무가 이양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그 이양받은 사무를 원 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, 예산, 장비 및 인력을 동시에 이관하 여야 한다.
- 제21조(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) 국가는 해오름 산업벨트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해오름산업벨

트발전사업 수행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22조(권한의 위임)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및 중앙행정기 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할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관할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행정 안전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시장·군수 ·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